

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규정

- 제정 : 2013. 7. 12.
- 개정 : 2013. 10. 29.
- 개정 : 2018. 3. 1.
- 개정 : 2019. 6. 18.
- 개정 : 2021. 9. 1.
- 개정 : 2021. 12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규정에 의거 심의한다.

1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의 연구 개발
2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
3. 기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에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장이 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과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,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/2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3.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3-0-3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 규정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8조(자체평가) 위원회는 매년 1회 모집단위별로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반영하고 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.